

2026년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공고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에서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9월 09일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장

1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상이(지원내용 참고)
- ☐ 지원목적 : 글로벌 규제 대응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지원 체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
 - * 의료·건강·영양 등 치료·회복·관리 목적으로한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으로써 임상실증 등 데이터 기반 기능성 소재·식품(특수의료용도용 식품(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
- ☐ 신청자격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 * 대상 소재 범위 : 1)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2)수입에 의존하는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
 - *** 대상제품(식품) : 1)특수의료용도식품, 2)건강기능식품, 3)기타 활용 제품(기능성표시식품 등)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0. 31.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협약기간 27년까지 연장 가능)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 2026.09.09. ~ 2026.09.22.(14일간)
 - 접수 : 2026.09.09. ~ 2026.09.22.(14일간)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지원건수	지역
1	패키지 지원 (임상 실증지원 + 국내 인허가)	• 인체 적용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개별인정소재 등록 지원 (*신규 및 기진행 건 모두 가능, 협약 기간 연장 가능) - 국내 인허가 지원(기능성 원료 인정 등) (*신규 기능성 원료 신청 컨설팅 비용 보조)	80,000 이내/건	1건	전국
2	시험평가 지원	•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획득 및 신뢰성 확보 지원 - 효능평가(함량 및 확인시험 등) 비용 지원 - 식품 안전관리 항목 및 유해 물질 시험평가 비용 지원	5,000 이내/건	5건	전국
3	국외 인허가 지원	• 국외 인허가 대응 지원을 통해 제품의 합법적 시장 진입 및 사업화 기반 강화 - 국외 인허가 지원(제품 및 원료 등록 FDA, Novel Food, Health Claim, GACC, BPOM 등)	10,000 이내/건	1건	전국
4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	• 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시장 진입 확대 - 국내 품질인증 지원(HACCP, GMP 등)	5,000 이내/건	1건	전국
5	해외마케팅 지원	• 기업 제품 홍보용 샘플 제작지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시회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샘플 제작	3,000 이내/건	6건	전국

※ 대상제품(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

※ 분야별 중복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별 개별 신청 필수

※ 지원기간(협약일로부터 ~ 2026. 10. 31.)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협의 및 검토를 통해 협약 연장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1) 신청기업의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은 국내 개발 원료를 활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원료는 지식재산권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2) 지원사업 종료 후 판매를 위한 제품 생산 비용은 기업 자부담으로 함
-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일반판매업 신고(등록)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 4)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의 사업화 성과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본 사업의 성과관리 및 실적보고 목적으로만 활용됨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09. 09.(수) ~ 2026. 09. 22.(화) 17:00 (시간엄수)
- 신청방법 : <https://www.bsms.or.kr/> 홈페이지 신청
- 접수처 : <https://www.bsms.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스템 접수
- 문의처
 - 인체적용시험 실증지원, 시험평가, 국내외 인허가, 국내외 품질인증, 해외마케팅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한겨레 주임연구원	041-522-4850	marsalien@kbcluster.or.kr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신청서)	8	기타 기업서류
2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4) 기업신용도 평가 서류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허가·등록증 7) 공급기관 견적서, 공급기관 회사 소개서 8)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등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5	기업현황카드		
6	자부담금 납입 협약서		
7	자가진단표		
※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컨설팅 , 제품 디자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신청기업의 경우 6. 자부담금 납입 협약서, 8. 기타 기업서류 내 7) 공급기관 견적서 서류 제외			

4

추진일정

단 계	내 용	비 고
공고/접수 (09.09 ~ 09.23)	· 지원사업 공고 · 관련 양식에 의거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기업 → 추진기관
↓		
선정평가/결과통보 (09.28 ~ 10.02)	· 대내외 유사·중복성 검토 · 신청 프로그램 평가(발표) ·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지원금 확정), 선정결과 통보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10.06~10.08)	· 선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추진기관 → 기업
↓		
사업수행	· 협약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 사업수행	수혜기업 및 공급처
↓		
중간모니터링	· 진행상황 및 진도 점검 · 지원 프로그램 추진 애로사항 등 청취	추진기관
↓		
완료/결과보고 (~ 10.31)	·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 추진기관
↓		
완료평가/결과통보 (11.01 ~ 11.31)	·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발표/서면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급	결과평가위원회 추진기관 → 기업
↓		
기업지원금 지급 (12월 중)	· 결과 평가에 의한 기업 지원금 지급	추진기관 → 공급처
↓		
성과/만족도 조사 (~ 03.31)	· 고용,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추진기관

※ 추진일정은 신청 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협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중간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일정은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서류심사(1차):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 선정심사(2차): 지원기업 서면평가 및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발표평가: 패키지 지원(인체적용시험 실증지원 + 국내 인허가)

※서면평가: 시험평가 지원, 국내외 인허가 지원,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제품디자인 지원

- ### □ 심사절차:
- ① 발표평가: 지원기업 PT 발표(10분) → 질의·응답(10분)
 - ② 서면평가: 지원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10분)

- ### □ 평가기준:
-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수출실적 기업 우대]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업 역량 (10)	기업인증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ISO 등 -1개(1점), 2개(2점), 3개(3점), 4개(4점), 5개 이상(5점)	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확보 -1개(1점), 2개(2점), 3개(3점), 4개(4점), 5개 이상(5점)	5
기술성 (45)	개발 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	15
	파급효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10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성	10
	기술개발 추진 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사업성 (45)	개발 기술의 신규성	-신규소재 활용을 통한 제품화 추진	10
	개발 제품 시장 전망	-시장 규모 및 수익성 -시장 진입 및 수출 확대 가능성 정도 -제품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적절성 정도	15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판로 개척 가능성 -판매 전략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정도	10
	사전 준비성	-기초 데이터, 특허 등 신청 과제 관련 사전 준비정도	10
가점 및 우대사항 (10)	추가 가점	-수출실적 보유(3점)	3
		-충청남도(2점), 예산군(2점) 소재기업 (사업자등록증 필수(본사, 연구소, 공장), ex) 충남 예산군 소재기업 4점)	4
	우대사항	-여성, 장애인, 사회적, 녹색 기업 각(1점) 최대(3점)	3

- ### □ 결과발표: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E-mail로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방법 및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지원 내역 총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 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기업 자부담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급기관(공급기업)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이며,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결과평가 및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사업 운영지침 및 협약 내용에 따라 **수혜기업 또는 공급기관(공급기업)**에 지급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 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 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동일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 내용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8호)」을 준용함